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 Int. Cl. H04M 3/4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3월27일 10-0563290 2006년03월15일
--	-------------------------------------	--

(21) 출원번호	10-2003-0057749	(65) 공개번호	10-2005-0020088
(22) 출원일자	2003년08월21일	(43) 공개일자	2005년03월04일

(73) 특허권자	(주) 콘텔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8
(72) 발명자	양병수 경기도용인시죽전동1118대지마을현대홈타운3차505동801호
(74) 대리인	김함곤 박영일 안광석

심사관 : 강병섭

(54)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녹음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녹음시스템은 (a) 이동서비스교환기가 현재 통화중에 있는 소정 이동통신 이용자의 녹음서비스 요청에 따라 발신된 진화호를 분석하여 소정의 특성코드가 인식되면 홈위치등록기로 해당 특성코드의 처리를 요청하는 단계; (b) 홈위치등록기가 녹음서버를 통화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녹음서버로의 호 설정을 위한 루팅정보를 등록/관리하고, (a)단계를 통해 소정의 특성코드가 수신되면 해당 특성코드가 다자간 통화서비스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녹음서버의 루팅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c) 녹음서버가 녹음서비스 가입자들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이동서비스교환기로부터 녹음서버 루팅정보에 의거한 호 설정이 요청되면,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의 녹음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녹음을 시작하는 단계; (d) 이동서비스교환기가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로부터 녹음발효를 요청받고, 현재 통화중인 호에 녹음서버를 연결하여 다자간 통화를 위한 통화로를 형성하는 단계; 및 (e) 녹음서버가 통화로를 통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도중 이동서비스교환기로부터 통화종료가 통지되면 통화내용 녹음을 종료하고,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통화내용의 녹음완료를 알리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방법에 대한 절차도이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의 목적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이동통신망에 녹음서버를 추가하여 그 녹음서버를 이동통신망의 부가서비스 중 하나인 다자간 통화서비스에 이용함으로써 통화대상자들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줄 수 있도록 한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통화시 그 통화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은행거래, 증권거래, 보험계약 등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유선전화기에 부착된 녹음기능을 갖는 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통해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화내용 녹음방법은 통화내용 녹음을 위한 별도의 녹음장비(예컨대, 자동응답장치)를 구비해야만 하고, 휴대폰의 적은 메모리 용량으로 인해 수 분(예컨대, 약 5분) 이내의 통화내용만을 녹음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별도의 녹음장비 및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내용을 타 단말기(예컨대, PC)를 위한 다양한 파일(예컨대, MP3, WAV 등)로의 변환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많은 양의 통화내용(예컨대, 은행거래, 증권거래, 보험계약 등) 녹음이 가능한 녹음서버를 이동통신망에 추가하여 그 녹음서버를 다자간 통화서비스에 이용함으로써 기존 이동통신망 구성요소들(예컨대, 이동서비스교환기, 홈위치등록기)의 동작 프로파일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통화대상자들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줄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은 녹음서버를 통화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녹음서버로의 호 설정을 위한 루팅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이동서비스교환기로부터 특성코드처리 요청에 따른 소정의 특성코드를 전달받고 해당 특성코드에 대응되는 서비스유형을 식별하여 그 서비스유형이 다자간 통화서비스로 확인되면, 이동서비스교환기로 녹음서버의 루팅정보를 전송하는 홈위치등록기; 현재 통화중에 있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녹음서비스 요청에 따라 발신된 전화호를 분석하여 소정의 특성코드가 인식되면, 홈위치등록기로 해당 특성코드의 처리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녹음서버 루팅정보를 전달받고, 해당 녹음서버 루팅정보에 의거하여 녹음서버로의 호를 설정한 후,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에 의해 녹음발호가 요청되면 현재 통화중인 호에 녹음서버를 연결하여 다자간 통화를 위한 통화로를 형성하는 이동서비스교환기; 및 녹음서비스 가입자들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이동서비스교환기로부터 호 설정시 전달받은 정보를 가지고 현재 녹음서비스를 요청한 이동통신 이용자의 녹음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녹음을 시작하고, 이동서비스교환기에 의해 형성된 통화로를 통해 양자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며, 이동서비스교환기로부터 통화내용 종료가 통지되면 녹음을 종료하고 녹음서비스 가입자인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로 통화내용의 녹음완료를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녹음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방법은 (a) 이동서비스교환기가 현재 통화중에 있는 소정 이동통신 이용자의 녹음서비스 요청에 따라 발신된 전화호를 분석하여 소정의 특성코드가 인식되면, 홈위치등록기로 해당 특성코드의 처리를 요청하는 단계; (b) 홈위치등록기가 녹음서버를 통화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녹음서버로의 호 설정을 위한 루팅정보를 등록/관리하고, (a)단계를 통해 소정의 특성코드가 수신되면 해당 특성코드가 다자간 통화서비스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녹음서버의 루팅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c) 녹음서버가 녹음서비스 가입자들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이동서비스교환기로부터 녹음서버 루팅정보에 의거한 호 설정이 요청되면, 현재 녹음서비스를 요청한 이동통신 이용자의 녹음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녹음을 시작하는 단계; (d) 이동서비스교환기가 현재 녹음서비스를 요청한 이동통신 이용자로부터 녹음발호를 요청받고, 현재 통화중인 호에 녹음서버를 연결하여 다자간 통화를 위한 통화로를 형성하는 단계; 및 (e) 녹음서버가 통화로를 통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도중 이동서비스교환기로부터 통화종료가 통지되면 통화내용 녹음을 종료하고,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통화내용의 녹음완료를 알리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이하, 본 발명에 따른 녹음시스템이라 함)(100)은 가입자정보처리센터(CCBS : Customer Care and Billing System)(110), 홈위치등록기(HLR : Home Location Register)(120), 이동서비스교환기(MSC : Mobile Service Switching Center)(130), 녹음서버(140), 인터넷(IP Network)(151), SS7 신호망(SS7 Network)(152), 음성통화망(Telephony Network)(153), 기지국(160), 이동통신단말기(예컨대, 휴대폰)(170), 단문메시지센터(SMSC : Short Message Service Center)(180) 및 사용자단말기(예컨대, PC)(19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녹음시스템(100)에서 통화내용을 녹음해주는 서비스(이하, 녹음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는 이동통신망에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정상 통화중인 발신 또는 착신 가입자(즉, 다자간 통화서비스에 가입한 발신 또는 착신 가입자)가 제3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통화대상을 호출하여 동시에 다자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다자간 통화서비스로는 3자통화(Three-Way Calling)서비스, 회의통화(Conference Calling)서비스 등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하되, 제3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통화대상을 녹음서버(140)로 한정한다.

가입자정보처리센터(110)는 녹음서버(140)를 제3 또는 그 이상의 통화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이하, 다자간 통화서비스라 함)에 대한 유형정보와, 해당 녹음서버(140)로의 호 설정을 위한 루팅정보(SAC : Service Access Code)(예컨대, 녹음서버의 전화번호)와,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녹음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정보를 기 구비된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여기서, 다자간 통화서비스의 유형정보란 이동통신망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수의 부가서비스들 중 본 발명에 이용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로서, 예를 들어, '\*84'와 같이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입자정보처리센터(110)는 인터넷(151)을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녹음서비스의 가입을 신청받아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들(즉, 녹음서비스 가입자들)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녹음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한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정보를 전달받아 등록한다. 이때, 가입자정보처리센터(110)가 등록/관리하는 이동통신 이용자(즉, 녹음서비스 가입자) 정보에는 예를 들어, 이름,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단말기 전화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ID 및 비밀번호는 녹음서비스 가입자가 녹음된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 해당 가입자의 인증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후, 가입자정보처리센터(110)는 다자간 통화서비스의 유형정보와, 해당 다자간 통화서비스에서 제3 또는 그 이상의 통화대상으로 설정된 녹음서버(140)의 루팅정보를 인터넷(151)을 통해 홈위치등록기(120)로 전송하고, 또한,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녹음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정보를 인터넷(151)을 통해 녹음서버(140)로 전송한다.

홈위치등록기(120)는 이동통신망 구성요소로서의 기본기능을 모두 수행하되, 인터넷(151)을 통해 가입자정보처리센터(110)와 연동하여 다자간 통화서비스의 유형정보와, 해당 다자간 통화서비스에서 제3 또는 그 이상의 통화대상으로 설정된 녹음서버(140)의 루팅정보를 전달받아 기 구비된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에 등록/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홈위치등록기(120)는 SS7 신호망(152)을 통해 이동서비스교환기(130)와 연동하여 이동서비스교환기(130)로부터의 요청에 따른 특성코드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동서비스교환기(130)는 이동통신망 구성요소로서의 기본기능을 모두 수행하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음성합성장치(Call Mixer)를 구비하여 통화상태에 있는 통화호에 녹음서버(140)를 연결하여 다자간 통화로를 형성시킴으로써 녹음서버(140)를 통해 통화내용이 녹음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이동서비스교환기(130)에 구비되는 음성합성장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장비로서,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녹음서버(140)는 이동통신망에 구비되어, 인터넷(151)을 통해 가입자정보처리센터(110)와 연동하여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녹음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정보를 전달받아 관리하고, SS7 신호망(152) 및 음성통화망(153)을 통해 이동서비스교환기(130)와 연동하여 전화통화자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해주고, 녹음서비스 가입자의 통화내용 청취 또는 삭

제 요청시 녹음된 통화내용을 제공하거나 삭제해주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녹음서버(140)는 SS7 신호망(152)을 통해 이동서비스교환기(130)로부터 통화내용 녹음을 위해 필요한 신호를 전달받기 위한 중계호 제어 신호장치(예컨대, SS7 ISUP, ISDN PRI 등)(도시생략)와, 음성통화망(153)을 통해 이동서비스교환기(130)와 음성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중계선 정합장치(예컨대, E1, T1)(도시생략)와, 인터넷(151) 연결을 위한 통신장치(도시생략)와, 녹음서비스 가입자의 상대방과의 통화에 따른 통화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하드디스크(도시생략)와, 녹음서비스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도시생략) 및 각 구성요소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서비스 제어장치(즉, CPU)(도시생략)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서비스 제어장치는 내부 메모리를 구비하여 녹음서비스 가입자들의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방법을 설명토록 하되,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녹음시스템(100)의 구성요소들의 동작과 병행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방법에 대한 절차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녹음시스템(100)의 홈위치등록기(120)는 본 발명에 따른 녹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에 대한 유형정보(예컨대, \*84)와, 해당 다자간 통화서비스에서 제3 또는 그 이상의 통화대상으로 설정된 녹음서버(140)의 루팅정보를 가입자정보처리센터(110)로부터 전달받아 사전에 등록/관리하고 있다(s100a). 또한, 녹음서버(140)도 본 발명에 따른 녹음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정보를 가입자정보처리센터(110)로부터 전달받아 사전에 등록/관리하고 있다(s100b).

현재, 이동통신 이용자가 소정 통화대상자와 통화중인 상태에서(s105) 통화내용을 녹음하고자 녹음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동서비스교환기(130)는 기지국(160)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즉, 이동통신단말기)(170)로부터 발신된 전화호를 수신한다(s110). 여기서, 이동통신 이용자는 녹음서비스를 위한 특정코드(예컨대, \*84)를 단말기(170)상에 입력하여 전송시킴으로써 녹음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이용자는 복수명의 통화대상자와 통화중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동서비스교환기(130)는 s110단계를에서 수신한 전화호를 분석하여 소정의 특성코드(예컨대, \*84)가 인식되면(s115), 홈위치등록기(120)로 해당 특성코드를 전송하여 특성코드의 처리를 요청한다(s120). 일반적으로, 이동서비스교환기(130)는 전화호를 바탕으로 특성코드가 인식되면 홈위치등록기(120)로 특성코드의 처리를 요청하는 동작과정을 수행한다.

홈위치등록기(120)는 s120단계를 통해 이동서비스교환기(130)로부터 소정의 특성코드를 전달받고, 해당 특성코드에 대응되는 서비스유형을 식별하여(s125), 식별된 서비스유형이 본 발명에 따른 녹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로 확인되면(s130), 해당 다자간 통화서비스에서 제3 또는 그 이상의 통화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녹음서버(140)의 루팅정보를 이동서비스교환기(130)로 전송한다(s135).

이동서비스교환기(130)는 s135단계를 통해 특성코드에 대응되는 녹음서버(140)의 루팅정보를 전달받고(s140), 해당 루팅정보를 가지고 녹음서버(140)로 호를 설정한다(s145). 여기서, 이동서비스교환기(130)는 녹음서버(140)로 호 설정시, 본 발명에 따른 녹음서비스를 요청한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정보(예컨대, 전화번호)와,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와 통화상태에 있는 통화대상자의 단말기정보(예컨대, 전화번호)를 녹음서버(140)로 전송한다.

녹음서버(140)는 s145단계를 통해 녹음서비스를 요청한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정보와,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와 통화상태에 있는 통화대상자의 단말기정보를 전달받고, 전달받은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정보를 가지고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의 녹음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한다(s150). 이후, 녹음서버(140)는 이동통신 이용자가 녹음서비스 가입자로 확인되면,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170)로 통화내용이 녹음됨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송출하고(s155), 통화내용의 녹음을 시작한다(s160). 이때, s155단계를 통해 녹음안내방송을 전달받은 이동통신 이용자(즉, 녹음서비스 가입자)는 자신의 단말기(170)상의 통화버튼(도시생략)을 누름으로써 녹음발효를 요청할 수 있다.

이동서비스교환기(130)는 본 발명에 따른 녹음서비스를 요청한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170)로부터 녹음발효가 요청되면(s165), 다자간 통화 발효를 요청한 것으로 인식하여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와 통화대상자간의 통화중이던 호에 녹음서버(140)를 연결하여 다자간 통화를 위한 통화로를 형성한다(s170).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이동서비스교환기(130)는 일반적인 다자간 통화서비스에서와 같이 동작한다. 단지, 본 발명에 따른 이동서비스교환기(130)는 제3 또는 그 이상의 통화대상으로 녹음서버(140)를 연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녹음서버(140)는 s170단계에서 형성된 통화로를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와 통화대상자간에 이루어지는 통화내용을 녹음한다.

한편, 이동서비스교환기(130)는 본 발명에 따른 녹음서비스를 요청한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170)로부터 통화종료가 요청되면(s175), 녹음서버(140)로 통화종료를 통지한다(s180).

녹음서버(140)는 s180단계를 통해 이동서비스교환기(130)로부터 통화종료가 통지됨에 따라 통화내용 녹음을 종료하고, 해당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기 구비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s185). 여기서, 녹음서버(140)는 다양한 파일형태(예컨대, MP3, WAV 등)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녹음서버(140)는 단문메시지센터(180)와의 연동을 통해 녹음서비스 가입자인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170)로 통화대상자와의 통화내용이 녹음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이하, 녹음완료메시지라 함)를 전송한다(s190). 이때, 녹음완료메시지에는 통화시간, 통화날짜,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와 통화한 통화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녹음서버(140)는 녹음서비스 가입자가 전화기 또는 사용자단말기(190)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녹음된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삭제를 요청하면, 해당 녹음서비스 가입자의 인증을 수행한 후, 녹음서비스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동작한다. 이러한 통화내용 청취/삭제과정은 녹음서버(140)의 일반적인 동작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의 설명은 하나의 실시예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한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경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시예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각 구성 요소의 형상 및 구조는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이동통신망에 녹음서버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별도의 녹음장비 구비 없이도 은행거래, 증권거래, 보험계약 등과 같은 많은 양의 통화내용을 용이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동통신망의 부가서비스 중 하나인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녹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동서비스교환기, 홈위치등록기 등과 같은 이동통신망 구성요소들의 동작 프로파일 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녹음서비스를 위한 망 구성요소들의 동작 프로파일 변경에 따른 비용지출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57) 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삭제

#### 청구항 2.

- a) 이동서비스교환기가 현재 통화중에 있는 소정 이동통신 이용자의 녹음서비스 요청에 따라 발신된 전화호를 분석하여 소정의 특성코드가 인식되면, 홈위치등록기로 해당 특성코드의 처리를 요청하는 단계;
- b) 홈위치등록기가 녹음서버를 통화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녹음서버로의 호 설정을 위한 루팅정보를 등록/관리하고, (a)단계를 통해 소정의 특성코드가 수신되면 해당 특성코드가 다자간 통화서비스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녹음서버의 루팅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 c) 녹음서버가 녹음서비스 가입자들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이동서비스교환기로부터 녹음서버 루팅정보에 의거한 호 설정이 요청되면, 현재 녹음서비스를 요청한 이동통신 이용자의 녹음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녹음을 시작하는 단계;

(d) 이동서비스교환기가 현재 녹음서비스를 요청한 이동통신 이용자로부터 녹음발효를 요청받고, 현재 통화중인 호에 녹음서버를 연결하여 다자간 통화를 위한 통화로를 형성하는 단계; 및

(e) 녹음서버가 통화로를 통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도중 이동서비스교환기로부터 통화종료가 통지되면 통화내용 녹음을 종료하고,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통화내용의 녹음완료를 알리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b)단계는

홈위치등록기가 녹음서버를 통화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에 대한 유형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이동서비스교환기로부터 전달받은 특성코드의 서비스유형을 식별하여 그 서비스유형이 다자간 통화서비스로 확인되면 녹음서버의 루팅정보를 이동서비스교환기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방법.

###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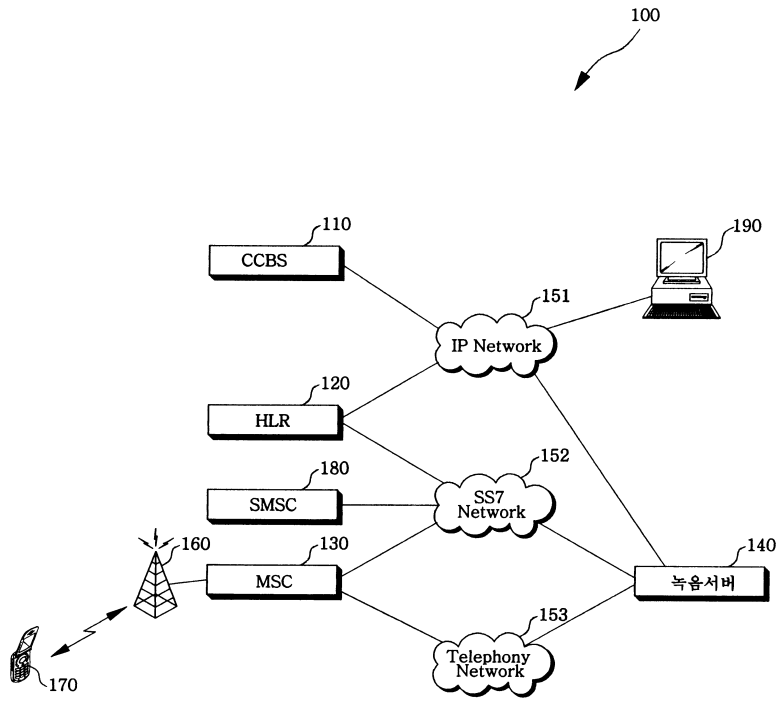
녹음서버가 이동서비스교환기로부터의 호 설정 요청시, 현재 통화상태에서 녹음서비스를 요청한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정보와,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와 통화상태에 있는 통화대상자의 단말기정보를 전달받고, 전달받은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정보를 가지고 이동통신 이용자의 녹음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녹음서비스 가입자로 확인되면, 해당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통화내용이 녹음됨을 알리고, 녹음을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다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내용 녹음방법.

### 청구항 4.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